

의안번호	2220878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10.1.
추 계 번호	2220878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5 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	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(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)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.</u> (제1항)	의무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(제2항) 4. <u>대표자,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범죄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</u>	의무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의5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 취소)	×	·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시설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,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“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¹⁾”을 시행하고 있음²⁾
- 개정안은 대표자,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또한, 개정안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

1) 코드: 1453-304

2)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(코드: 1453-304)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지원, 온라인 판로지원시스템 개편,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 지원 등을 수행

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관련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